

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년 2월 15일
의회운영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년 2월 6일, 장규권 의원 외 5명
- 나. 회부일자 : 2023년 2월 6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4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최 중
제1차 의회운영위원회(2023년 2월 15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장규권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행정사무감사의 시기를 제1차 정례회로 변경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행정사무감사의 시기를 ‘제2차 정례회’ 에서 ‘제1차 정례회’ 로 변경
(안 제2조제2항)
-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변경
(안 제1조, 안 제3조제4항, 안 제5조제1항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김하영

나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「지방자치법」 제49조 및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41조에 의거 구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1차 정례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.
- 안 제2조제2항의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“제2차 정례회”에서 “제1차정례회”로 변경하고, 안 제1조, 안 제3조제4항, 안 제5조제1항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변경하는 것임.
- 이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제1차 정례회로 변경하여 결산과 연계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, 다음연도 예산편성 방향 제시가 용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- 이상과 같이 본 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,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, 보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